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7-69
----------	-------

제출년월일 : 2017. 7.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설·제빙 책임순위 명시

- 소유자, 거주자 등 건축물 제설책임순위(안 제3조)

나. 제설·제빙 범위 명시

- 시설별(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등) 제설·제빙 범위(안 제4조)

다. 제설·제빙 시기 명시

- 시설별(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등) 제설·제빙 시기(안 제 5조)

라. 제설·제빙 방법 명시

- 시설별(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등) 제설·제빙 방법(안 제 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결과 : 2017. 6. 1. ~ 2017. 6. 21. (제출된 의견 없음)
- 나.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권고사항 있음

평가대상	권고사항	조치사항
제6조 (제설·제빙 방법)	<p>※ 가정복지과 권고안</p> <p>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눈이나 얼음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p> <p>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행자의 이동이 없는 곳이나 공터 등</p>	<p>○ 권고사항 : 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는 보행인의 통행을 위해 마련된 도로의 부분으로 제설작업으로 발생한 잔설을 보도 가장자리로 밀어 신속히 통행을 확보해야 하며, - '보행자의 이동이 없는 곳'은 보도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설작업하는 주민이 잔설 야적장까지 옮기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차도 등에 잔설을 적치한다는 의미가 되므로,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본 제정안의 '제6조(제설·제빙 방법) 제1조 1항 1호 조항 중 '보도의 가장자리'를 '보행자의 이동이 없는 곳'으로 바꾸는 것은 반영이 어려움

- 다.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7. 7. 4.)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1부.
-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8.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 관리자, 점유자 순

제4조 (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공동주택 및 각종 시설의 관리 주체 포함)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1. 보도

가.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

나. 공동주택 단지 내 구역 및 대지경계에 접한 보도구간

다.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해당 대지경계선에 접한 보도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 (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눈이나 얼음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

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7조(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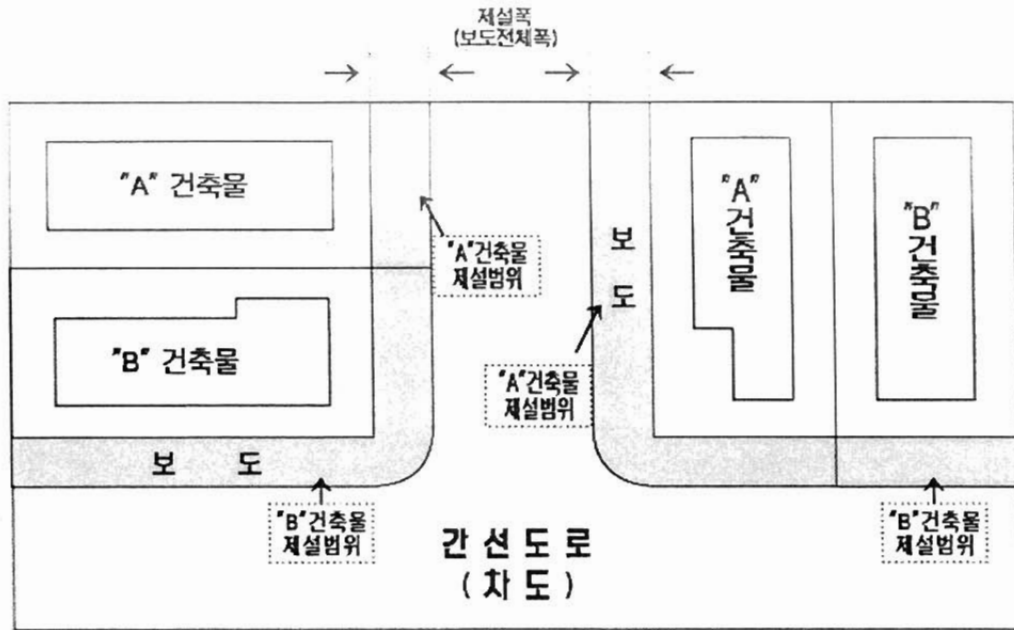
제9조(제설·제빙 도구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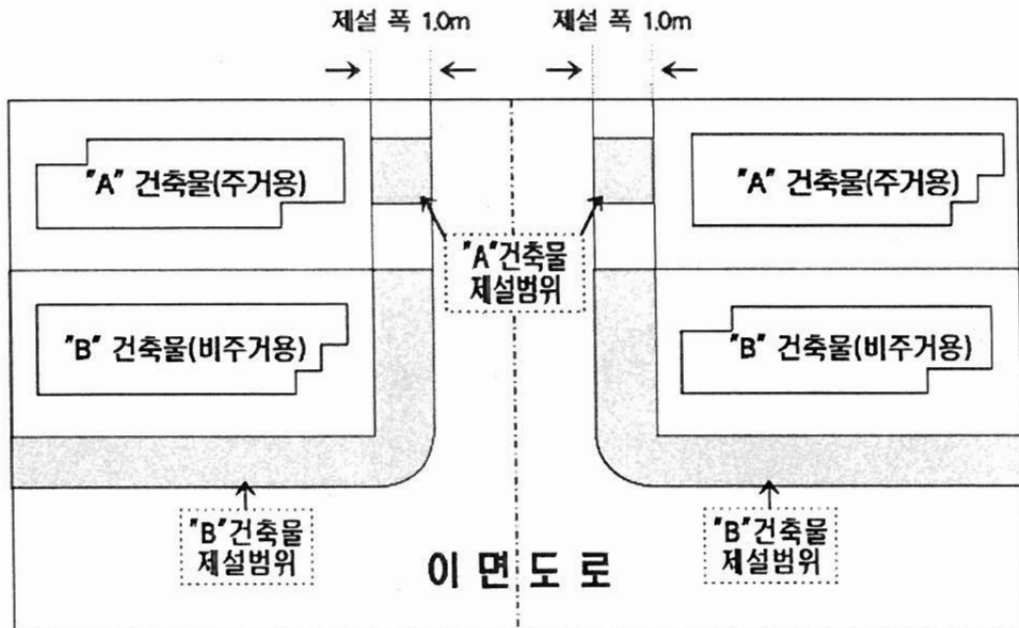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범위 예시도

1) 보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별표 2>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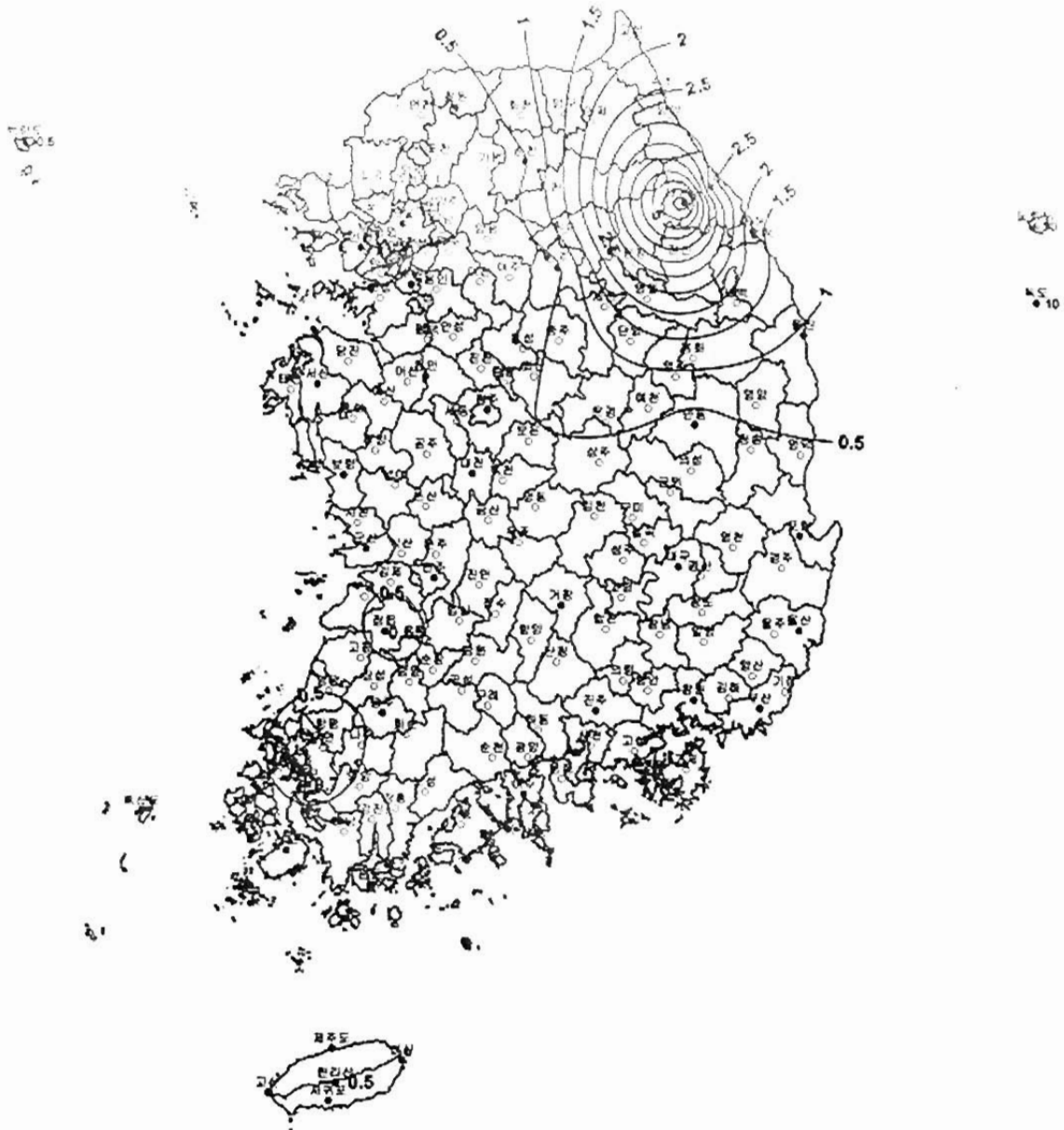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m ²)	적설량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		비고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기본지상적설 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	특정 지형조건 (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	
0.5이하 지역	50.0	75.0	25.0	37.5	
0.5초과 1.0이하 지역	55.0	82.5	27.5	41.3	
1.0초과 1.5이하 지역	63.0	94.5	31.5	47.3	
1.5초과 2.0이하 지역	67.0	100.5	33.5	50.3	
2.0초과 2.5이하 지역	70.0	105.0	35.0	52.5	
2.5초과 3.0이하 지역	84.0	126.0	42.0	63.0	
3.0초과 3.5이하 지역	98.0	-	49.0	-	
3.5초과 4.0이하 지역	112.0	-	56.0	-	
4.0초과 4.5이하 지역	126.0	-	63.0	-	
4.5초과 5.0이하 지역	140.0	-	70.0	-	
5.0초과 지역	140.0	-	70.0	-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m²이상으로 한다.(KBC 2009)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값의 50%강설시 부터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도록 제5조(제설·제빙 시기)의 내용 표기
- 건축구조기준(참고)에 따라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m²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s_b



주) 1) 지역명칭은 통계청의 2012년 1월 25일 기준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라 시, 군을 단위로 작성하였다.

2) ●은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있는 지역, ○는 최심적설깊이 자료가 없는 지역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통안전국 토목과 김 대 욱
연 락 처	02-3153-9763